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카르텔조사국에 설치한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의 명칭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두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2명(9급 2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을 두며, 조사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규정 등에 관한 교육·훈련
4. 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관리
5.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감독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훈련
8.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소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 또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12.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운영
13. 전자적 증거의 관리
14.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제9조제2항 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각각 “기업협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기업협력정책관”으로, “제12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를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시장감시정책과·시장구조개선정책과·국제협력과·기업집단결합정책과·기업거래정책과·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용
6. 산업별·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7.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8.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9.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10.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제도 운영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도 운영
1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13.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
운용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
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
책의 수립 · 운용
1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
정 · 운용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의 설정 · 운용
17.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
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18.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추진
19.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
기준의 설정 · 운용
20. 공공부문 입찰, 서비스업 · 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
수집 · 분석
2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 운용
2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 · 정
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23.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추진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 · 공표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 · 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 · 운용
6. 경쟁제한적인 법령 · 조례 · 규칙 · 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방안의 수립 · 시행
7.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8.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 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 · 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 · 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
· 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 총괄
 3.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4.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운용
 6.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운용
 7.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운용
 8.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운용

9.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10. 국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운용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5.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6.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7.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0.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관리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의 제정
·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5.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6.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
실태조사의 실시
7.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운용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11.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총괄과·소비자안전교육과·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정책과장”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을 “소비자안전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14. 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신문고 제도의 운영

15.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조정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24 홈페이지의 운영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3. 표시·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4.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5.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6.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8.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9.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0.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11.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12.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4.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5.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시행
 1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
의 수립·시행
 17.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
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19.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홍
보
 20.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
· 개정 및 제도 운영
-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
립·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
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7.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9.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0.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1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4.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제정·개정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17.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18.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
-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 및 약관특수거래과를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6.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지식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2조제2항 중 “카르텔총괄과·입찰담합조사과·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및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제조카르텔조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르텔조사과·경제분석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팀”으로,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운영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8.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⑦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6.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7.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8.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운용
10.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단 현황 등

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출자·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운용

6. 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7.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분석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분석

4.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제13조의 제목 “(기업거래정책국)”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거래정책국장”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유통대리점조사과·기업결합과·국제기업결합과 및 가맹거래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6.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등의 위탁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하 “기술유용행위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 기법의 개발
 4.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신고센터의 운영
 6.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3.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 · 평가
5. 국내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⑦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3. 국제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5.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 기업결합 제도 및 심사동향 분석

⑧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4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8명)”을 “8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7명)”을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분석과장·약관심사과장 및 특수거래과장”을 “특수거래정책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 및 경제분석과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별표 2 중 서기관 “31”을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7”을 “38”로 하고, 행정서기보 2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서기관 “31”을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7”을 “38”로 하고, 행정서기보 3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가맹거래과장”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을 각각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으로, “입찰담합조사과장”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통조사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5]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제20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4월 13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삭 제></u> <u>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u>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을 두며, 조사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u> <u>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조정</u> <u>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u> <u>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u>

법·규정 등에 관한 교육·훈련

4. 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관리

5.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감독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훈련

8.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간 업무협의를 등 협업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소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 또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제9조(경쟁정책국)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 · 국제협력과 · 디지털조사분석과 · 시장구조개선과 · 기업결합과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개발

12.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 · 운영

13. 전자적 증거의 관리

14. 전자적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 훈련

제9조(경쟁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업협력정책관
----- 기업협력정책관

-----.

③ 기업협력정책관-----

-----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
-----.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 · 시장감시정책과 ·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국제협력과 · 기업집단

· 국제기업결합과 및 경제분석
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
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
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조
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
책 동향의 조사·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
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
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결합정책과·기업거래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
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
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
책의 수립·운용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
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
·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
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
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
용
6. 산업별·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
행실태 점검
7.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8.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
업 등의 분야 업종별 거래 형

<u>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u> <u>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u> <u>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u> <u>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 <u>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u> <u>9.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u> <u>10.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제도 운영</u> <u>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도 운영</u> <u>1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u> <u>13.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u> <u>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u> <u>1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u>
---	--

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의 설정·운용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
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설정·운용

17.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
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
사와 개선 협의

18.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추진

19.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
행위 인가기준의 설정·운용

20. 공공부문 입찰,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 수집·분석

2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
도의 수립·운용

2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23.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
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

⑦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3.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운영
4. 전자적 증거의 관리
5.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⑧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

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공표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운용
6. 경쟁제한적인 법령·조례·규칙·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7.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8.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공표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운용
6. 삭제
7. 삭제
8. 경쟁제한적인 법령·조례·규칙·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10.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분장한다.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 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

⑨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운용
2.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운용
3.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 총괄
3.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4.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운용

7. 국내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8.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 운용

9. 삭제

⑩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 운용

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국제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5.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6.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심사 지침의 설정 · 운용

7.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 · 운용

8.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 · 운용

9.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 운용

10. 국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 운용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 ·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 · 수립 및 추진

2. 대기업 ·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 · 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 · 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 · 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추진

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6. 해외 기업결합 제도 및 심사
동향 분석

7.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
에 관한 국제협력

⑪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
영과 관리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
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
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영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
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추진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의 구성·운영 및 감독

5.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제7조제4항제26호에 따른 경
쟁 관련 영향의 경제분석 지
원

8.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9.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
사

<신 설>

6.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
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운용

7.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
의 실시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
원에 관한 사항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령의 집행과 관련된 감
독과 협조

10.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
성·관리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
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
행

2.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의 공
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
침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및 감독
5.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
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6.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
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7.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
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운용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
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추진
11.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
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기업집단국) ① 기업집

<삭 제>

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② 기업집단국에 기업집단정책
과 · 공시점검과 · 내부거래감시
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
관으로 보한다.

③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
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
단”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
행위에 관한 시책의 종합 및
조정

3.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4.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
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7. 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8.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
의 운영·관리

9.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
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
의 개발

10.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
립·운용

1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12.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
사기준 등의 설정·운용

13.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4.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5.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
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
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
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
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
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 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출자·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운용

7. 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8.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⑥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시책 수립, 심사지침의 설정·운용,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

<u>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u> <u>등에 관한 조사·시정조치·</u> <u>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u> 3. <u>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u> <u>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u> <u>점검 등 정보의 수집·분석</u> 4. <u>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u> <u>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u> <u>기법 개발과 교육·훈련</u> ⑦ <u>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 1. <u>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시책</u> <u>수립, 심사지침의 설정·운용,</u> <u>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u> 2. <u>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u> <u>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u> <u>및 이행 확인</u> 3. <u>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u> <u>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분</u> <u>석</u> 4. <u>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u> <u>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u>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생략) ② <u>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u> <u>과·소비자안전정보과·특수거</u>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u> <u>총괄과·소비자안전교육과·소</u>
--	--

래과·약관심사과 및 전자거래
과를 두되, 소비자정책과장·소
비자안전정보과장·특수거래과
장 및 약관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거래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
립·조정

3.·4. (생 략)

5. 「소비자기본법」·「소비
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
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
정·개정

6. ~ 8. (생 략)

9.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10. ~ 13. (생 략)

14. 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
신문고 제도의 운영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육성 및 지원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
자 홈페이지」의 운영

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
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
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4. (현행과 같음)

5. 「소비자기본법」 -----

6.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7. <u>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u>	<u><삭 제></u>
18. <u>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u>	<u><삭 제></u>
19. <u>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u>	<u><삭 제></u>
20. 「 <u>소비자기본법</u> 」에 따른 <u>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u>	<u><삭 제></u>
21. (생략)	21. (현행과 같음)
④ <u>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④ <u>소비자안전교육과장</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u>	<u><삭 제></u>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 <u>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u> 」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13. <u>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u>
14. <u>표시·광고사항 관련 심사 기준·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u>	14. <u>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 신문고 제도의 운영</u>
15. 「 <u>표시·광고의 공정화에</u>	15. <u>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u>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6. 표시 · 광고에 관한 실증자
료의 제출 요청 · 공개 및 입
시중지명령제의 운용

17. 표시 · 광고 관련 자율규약
의 심사와 관리

18. 표시 · 광고의 공정화를 위
한 교육 · 홍보의 실시

⑤ 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
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 계
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
비자보호시책의 수립 · 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
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 · 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

립 · 조정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24 홈페이지의 운영

<삭 제>

<삭 제>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 · 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 · 시행

2.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
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 개
정 및 제도 운영

3. 표시 · 광고사항 관련 심사기
준 · 고시의 제정 · 개정 및 제
도 운영

4. 표시 · 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5. 표시 · 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 · 홍보의 실시

6.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

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 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12.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

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8.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9.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0.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11.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12.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4.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5.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 감독

1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5.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7.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20.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⑥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7.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19.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홍보

20.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허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

3. 삭제	<u>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u>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 조치 및 이행 확인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6.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9.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7.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0.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9.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0.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
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
정·개정

1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
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4.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제정·개
정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육성 및 지원

17.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
획 수립·시행

18.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
체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
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

<삭 제>

⑦ 전자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
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
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
인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홍보

1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
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생략)

② 시장감시국에 시장감시총괄
과·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
시과 및 지식산업감시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시장감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
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
시과 및 약관특수거래과를 두
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
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
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

③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영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영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영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영
5. 삭제
6.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산업별·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6.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

및 이행실태 점검

14.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15.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 증기 및 수도업(이하 “금융
· 에너지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
석

16. 금융·에너지등 분야 시장
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7. 금융·에너지등 분야 사업
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
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8.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공
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
리

19. 삭제

20. 삭제

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
제의 운용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
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
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하
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
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서비스업 분야의 공정경쟁규
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5. 삭제
6.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
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제
도 운영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
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광
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
제의 운용

7. 삭제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
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관련 제도 운영

⑤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
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
보의 수집·분석

2.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
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
(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
외한다)의 심사·관리

5. 삭제

6. 삭제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
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
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하
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
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지식산업 분야 법 위반행위
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
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
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
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⑥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영
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영
3. 지식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
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
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
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
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
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

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
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
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
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생략)

②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
과·입찰담합조사과·카르텔조
사과, 국제카르텔과 및 민수입
찰담합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카르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
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축·운용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
축·운용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조카르텔조
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
르텔조사과·경제분석과 및 서
비스카르텔조사팀-----

-----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상시 감시 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련된 사항

7. 삭제

8.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2. 삭제

13.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14.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15.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16.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사항 중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이하 “제조업등 분야”라 한다)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운영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 간 공
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
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
의 조사와 시정

4. 제조업등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⑥ 국제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
도의 수립·운용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시
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
된 국제 협력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5.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
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
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
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추진

⑦ 민수입찰답합조사팀장은 제 4항의 사항 중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및 관리

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8.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⑦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

관리과 · 공시점검과 · 내부거래
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두
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
관계 등의 조사 ·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6.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
의 운영 · 관리

7.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
집 · 분석 · 관리 및 관련 지표
의 개발

8.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
사기준 등의 설정·운용

10.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
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
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

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
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
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
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
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출
자·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운영

6. 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
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
련

7.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
표권 사용거래 현황 등에 대
한 정보공개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 점검 등 정보의 수집·분석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 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사 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분석

4.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제13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
거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
라 기업거래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통정책관으로 하
며, 유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③ 유통정책관은 「공정거래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
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②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
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유
통대리점조사과·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과 및 가맹거래조
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
· 시행
2.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④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 정책과 · 제조하도급개선과 ·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기술유용 감시과 · 가맹거래과 · 유통거래과 · 대리점거래과 및 가맹거래 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 · 건설 · 용역 및 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센터의 운영

6.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 · 건설 · 용역 및 수리 등의 위탁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하 “기술유용행위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의 수립 · 시행

다.

⑤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
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
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
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기술유평행위등과 관련한 조
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기술유평행위등과 관련한 조
사 기법의 개발

4. 기술유평행위등과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
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기술유평행위등과 관련한 신
고센터의 운영

6. 기술유평행위등과 관련한 전
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
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
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
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5.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추진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
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
영과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제조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제조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
의 개발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
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
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
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3.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

4. 제조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삭제

6. 제조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⑦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용역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용역 위탁 관련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건설·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건설·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한 사항

4.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5. 국내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⑦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국제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5.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 기업결합 제도 및 심사동향 분석

⑧ 기술유통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 등의 위탁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하 “기술유통행위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유통행위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기술유통행위등과 관련한 조사 기법의 개발
4. 기술유통행위등과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기술유통행위등과 관련한 신고센터의 운영
6. 기술유통행위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⑨ 가맹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

⑧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삭 제>

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영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

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추진

4. 삭제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의 구성·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7.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

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운영

⑩ 유통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

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

행

2.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공

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

침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정

·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삭 제>

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
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및 감독

6.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
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7.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
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
의 설정·운용

10.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⑪ 대리점거래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삭 제>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운영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
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
진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
행의 확인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대
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⑫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
성·관리

<삭 제>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 ③ (생략)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삭제

4.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생략)

⑤ ~ ⑧ (생략)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4명(6급 6명, 7급 8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8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경제분석과장·약관심사과장 및 특수거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⑤ -----

-----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수거래정책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 및 경제분석과장-----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가맹거래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맹거래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u>가맹거래과장</u> 이 분장한다.	② ----- ----- ----- ----- ----- ----- ----- <u>유통대리점조사과장</u> -----.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민수입찰담합조사</u> 팀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서비스카르텔조사</u> <u>팀</u>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u> 이 분장	② ----- <u>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u> -----

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은 <u>입찰담합조사과</u>장이 분장한다.	----- ----- ----- ---<u>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u>--- ----- <u>제조카르텔조사과</u> <u>장</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u>31</u>		<u>3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7</u>		<u>38</u>	+1	
	·			·	·		
	·			·	·		
행정서기보			2				
<u>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신 설></u>		<u>2</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6</u>	-2	
	·			·	·		
	·			·	·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u>31</u>		<u>3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7</u>		<u>38</u>	+1	
		•		•	•		
		•		•	•		
행정서기보			3				
<u>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신 설></u>		<u>2</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6</u>	-2	
		•		•	•		
		•		•	•		